제 안 설 명

○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 령 군
(문 화 유 산 과)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18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공포를 통해 고령 대가야가 대한민국 다섯 번째 고도로 정식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고 고도지구내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를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4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등,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14조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제척·회피, 위원장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19조에 지정지구의 행위제한 및 관리(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제한, 허가시 고려사항,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 수립, 지정지구에 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35조에 주민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주민단체의 육성 및 지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지원결정, 보조금의 지급, 사후관리, 구조 및 용도변경, 권리·의무 등의 승계, 재산 처분의 제한, 부기등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중복지원 금지, 준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조세 등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일

문화유산과장 이 주 관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의결사항

고령군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고 령 군 수 (문화유산과장)
제출 연월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제정이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고 고도지구 내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를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 총칙(안 제1조 ~ 4조)

나.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안 제5조 ~ 14조)

다. 지정지구의 행위제한 및 관리 등(안 제15조 ~ 19조)

라. 주민지원사업 등(안 20조 ~ 35조)

3. 제정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입법예고 : 예고완료(25. 4. 25. ~ 25. 5. 16.), 의견서 첨부 및 반영

다. 예산관련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성별영향평가 : 가족행복과 검토 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고도 지구 내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 지정지구”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3. “경관”이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한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환경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건축자산·가로변 건축물·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 담장 및 마을길 조성, 폐가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5.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이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도 지정지구를 그 목적에 적합하게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및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침을 말한다.

6. “주민단체”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련된 주민협의회, 문화예술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말한다.

7.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8.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9.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10. “권장시설”이란 법 제8조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

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부합되는 것으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문화시설과 이에 준하는 사립 문화시설

나. 정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보유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다. 공예품·전통음식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전시·판매·체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라. 한옥 등을 활용한 민박 체험시설

마. 그 밖에 지정지구 안에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고도의 보존·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도의 지역 주민은 고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고도 지정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령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5조(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고도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사업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5. 고도관리지침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7. 권장시설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지정지구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2. 그 밖에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령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고령군의회 의원
2. 고령군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고령군 주민대표
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도시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에게 법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두고, 간사는 고도보존육성 업무 담당팀장이 하고, 서기는 고도보존

육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서기는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지역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자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서면 심의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 또는 지식·경험을 가진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역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증언 등을 위하여 참석한 외부인사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정지구의 행위제한 및 관리 등

제15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제16조(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허가 시 고려사항 등)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
5.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과 부합

하는지 여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제18조(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 수립) ① 군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외관, 규모, 용도 등 경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과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고도 지정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지정지구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정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권장시설에 대하여 법 제2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지방세 감면
3. 그 밖에 지정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등 지정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군수는 지정지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 등을 매수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권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

제20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이주대책 수립사업
6. 역사문화체험학습장・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사업
7. 마을도서관・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8.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업
9.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교육문화사업, 관광사업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주민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고도 지정지구의 보존・관리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의 설립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주민단체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도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군 소유의 재산을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정지구 안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협의회에 고도보존육성 지원 간사를 지정 배치하여 실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지정지구 안의 고도육성 및 주민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의 고도보존육성 지원 간사의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고도 안의 주민단체·문화단체·시민단체 등이 제안하는 고도의 육성과 주민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비용의 일부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고도 지정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여 군민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정비하며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① 제20조제3호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세부 설계도면 및 사업비 산출명세서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설계내용 검토 및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사(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발굴 조사
2. 동절기(12월~2월)와 착수시기가 겹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착수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착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보조금의 지급) ① 제24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발굴 조사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완료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한옥은 기와공사가 완료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결정 금액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나머지 보조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제26조(사후관리) 군수는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구조 및 용도변경 등)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
2. 지원받은 건축물의 용도

제28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소유자 또는 영업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 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받은 한옥 및 건축자산 등을 전매(매매·증여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배우자 및 직계혈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

외한다)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제공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보조금과 기 담보설정액을 제외한 잔액범위 내 한도
2. 대여의 경우 그로 인한 효용 증가부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승인 후 관리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제30조(부기등기 등) ①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및 건축자산 등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단, 한옥 수선·대수선의 경우 완료신고일로부터 보조금 지급전까지로 한다.

제3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착수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 이내에 공사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한 날부터 1년(완료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 이내에 공사나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겨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을 군수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 시행으로 매수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고자 할 때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중복지원 금지) ①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와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를 달리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고령군 출연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 제2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고도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군 소유의 재산을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조세 등 감면) ① 고도 지정지구 안의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세 및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조세 등 감면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처분과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주거환경 개선사업 :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

구분	한 옥	건축자산
지원 기준	가. 한옥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담장・대문 포함 : 최대 1.5억원 ・담장・대문 미포함 : 최대 1.1억원 나. 한옥을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8천만원	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자산을 수선・대수선 하는 경우 ・ 최대 1.3억원 나. 고도의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된 건축물 중 건립한 지 50년이 지나 보존할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거친 건축자산을 수선·대수선 하는 경우 ・ 최대 8천만원

비고

1.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공사비로 산정한다.
2.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3. 공사비는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매장유산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공사비에 포함한다.
4.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유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로경관 개선사업 :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

구분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
지원 기준	최대 3천만원 지원 *단, 한옥지원사업(담장포함)과 중복지원 불가	각 층별 3천만원 지원 (간판시설 포함)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와 ‘간판’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도로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지원 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건축자산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 간판		
신청내역	공사(설치)금액		원	신청금액	원
	사업량 (면적, 규격 등)			사업기간	20 . . ~ 20 . .
	기타(특이사항)				
사업대상지 현황	소 재 지		번지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구조	□한옥 □비한옥
	건폐율(%)			용적률(%)	
종전 보조금 지원내역	지원금액		원	지원기관(부서)	
	※다른 기관(부서)에 의해 신청인 및 건축주(세대원 포함)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 하여야 함.				

「고령군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인소유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소유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공사(설치)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1부. 5. 공사(설치)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6. 간판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색도안을 포함한 서류 1부(간판시설 지원 시에 한함). 7.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착수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 재 지				
지원결정번호			지원결정일	
착 수 일				
사업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 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고령군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완료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 재 지				
지원결정번호		지원결정일		
착 수 일				
공사(설치)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주 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지원 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건축자산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	
사업대상지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건축면적	㎡	용 도	

「고령군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설치)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설치)비 정산서류(집행내역서 등) 1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송금내역서 등 -노무비의 경우, 노무대장 및 송금내역서 등 3. 완료 도면 1부

【별지 제4호서식】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 재 지			대지면적	㎡
용도지구				
보조금액				
보조금수령일				
구 분	□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내 용	구 조		용 도	
	변 경 전		변 경 후	

「고령군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1부.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1부.

【별지 제5호서식】

권리 · 의무 승계서

<table>
<tr><td rowspan="2">승계대상</td><td>위치</td><td colspan="3"></td><td>용도</td><td></td></tr>
<tr><td>수량</td><td colspan="3">(동, 개)</td><td>면적(규격)</td><td>(㎡, m)</td></tr>
<tr><td rowspan="4">보조금
지원현황</td><td rowspan="3">지원구분</td><td rowspan="2">주거환경
개선사업</td><td>한옥</td><td colspan="3">□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td></tr>
<tr><td>건축자산</td><td colspan="3">□수선 □대수선</td></tr>
<tr><td colspan="2">가로경관개선사업</td><td colspan="3">□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td></tr>
<tr><td>보조금액</td><td colspan="2"></td><td>보조금 교부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권리 · 의무
승계</td><td colspan="3">기존 소유권자(인계자)</td><td colspan="3">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td></tr>
<tr><td>성 명</td><td colspan="3">(인)
(전화:)</td><td colspan="3">(인)
(전화:)</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내 용</td><td colspan="6">소유권 변경에 따라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td></tr>
</table>

「고령군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 · 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정지구와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재정 수반 요인이 있음 (안 제19조 ~ 안 제3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등 지정지구에 대한 지원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향후 시행계획 수립 및 국가유산청 중앙심의위원회 검토 후 확정되며, 세부 사업 계획, 국비지원규모, 지역 주민 참여도에 따라 사업예산이 크게 변동이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실정임.

4. 작성자 : 문화유산과 지방행정서기보 박민아(054-950-6763)

관련법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고도를 지정하면 5년 단위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

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 개축 · 증축 · 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 · 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 · 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③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 개축 · 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 · 확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 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⑥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⑦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3. “도시 · 군기본계획” 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 · 군관리계획” 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삭제 <2024. 2. 6.>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 · 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 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 전 화 번 호 : 044-205-3152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의 하단 구비서류 중 2. 대지(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인소유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소유주 인감증명서 각1부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의 하단 2번 구비서류 수정 - (수정 사항) 2. 대지(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인소유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소유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 소관 부서명 〉

고령군 문화유산과	
연 락 처	054-950-6763